

군포도시공사 제3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한 대 희



2023년 4월 6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11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채용자격기준)의 별표2 중 2급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직급별 채용 자격기준

직급별	자 격 기 준
2급	1.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. 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이 하 생 략	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문 원 미 (3 9 0 - 7 6 4 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
[별표 2]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	
직급별	자 격 기 준
2급	1.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.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이하 생략	
개정안	
[별표 2]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	
직급별	자 격 기 준
2급	1.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2.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의 임원 직하위 부서장으로 4년 이상 경력자 3. 상법 및 공법상 법인사업체에서 부장급 직위 이상으로 채용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. 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현행과 같음	